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0년 9월 6일

나. 회부일자 : 2000년 9월 7일

3. 제안이유

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21C 보건산업의 세계적인 생명공학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외 우수한 기업과 연구소에 홍보하여 유치하는 것이 관건임.

나. 이를 위해 도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국제보건산업 박람회를 개최기로 확정하고 준비중에 있으며

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국제보건산업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국제 보건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재단에 사무국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내지 제2조)

나. 재단은 국제보건산업박람회의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부대사업의 시행, 조직,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의 사업을 행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재단의 재산은 충청북도와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함(안 제4조)
- 라.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비 및 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마.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시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바.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사.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귀속되도록 함(안 제10조)
- 아. 도지사는 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에 위탁하여 사용·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5. 검토의견

재단법인 국제 보건산업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바

- 이는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에 국내외의 우량 기업과 연구소의 유치·홍보의 일환으로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국제 보건산업 박람회를 개최기로 함에 따라 행사를 전담할 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 기획예산처의 행사성 신규사업 예산지원 억제방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박람회 개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정원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선행과제인 예산 확보대책 및 한시정원 승인 등에 대하여

-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붙임 :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